별내신도시 A8-2블럭 남양휴튼 입주자 모집공고

HuTon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해 "청약통장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변경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십시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시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남양주시 주택과 - 24524호 (2009. 12. 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제지개발사업지구 A8-2블록

▣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지하2층, 지상 10~26층 아파트 10개동 총 644세대 (다세대기주 무주택 특별공급 : 20세대] 및 기타 부대 · 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구 분	아파트 코 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2298-01	2009000855(01)	101.8190	100	101.8190	24.6862	126.5052	4.1345	52.6051	183.2448	60.7476
	22298-02	2009000855(02)	116.592(A)	102	116.5924	29.4652	146.0576	4.7344	60.2378	211.0298	69.5618
	22298-03	2009000855(03)	116.671(B)	108	116.6715	30.0047	146.6762	4.7377	60.2787	211.6926	69.6090
	22298-04	2009000855(04)	116.499(C)	50	116.4998	28.4391	144.9389	4.7308	60.1899	209.8596	69.5065
	22298-05	2009000855(05)	128.2866	232	128.2866	25.9088	154.1954	5.2093	66.2796	225.6843	76.5388
	22298-06	2009000855(06)	135.5738	52	135.5738	28.5757	164.1495	5.5053	70.0446	239.6994	80.8865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층별	세대별분양가격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입주지정일)	계약 확인
		대지가격	건물가격	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2.25	10.6.25	10.10.25	11.6.25	11.10.25	12.2.25		
101.8190	1층	232,438,598	141,561,402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2층		156,561,402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3~4층		191,561,402	424,0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기준		211,561,402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116.592(A)	2층	266,164,380	213,835,620	48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3~4층		233,835,620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기준		243,835,620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116.671(B)	1층	266,344,981	193,655,019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2층		213,655,019	48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3~4층		233,655,019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기준		243,655,019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116.499(C)	1층	265,952,785	193,047,215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2층		213,047,215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3~4층		233,047,215	499,0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기준		243,047,215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128.2866	1층	292,860,481	180,139,519	473,0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2층		205,139,519	498,0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3~4층		225,139,519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		245,139,519	538,0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135.5738	1층	309,496,090	164,403,910	473,90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142,170,000	
	2층		189,403,910	498,90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149,670,000	
	3층		214,403,910	523,90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157,170,000	
	기준		264,403,910	573,90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172,17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책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과 체결해임상한액은 별도이며, 본 주택은 제2중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상한한 결과 체결해임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계약품목(옵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해당되어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비용은 상기공급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주택형별 비용 및 미감재의 처마가 있으므로 분양가임로그 등을 참조 할 것)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 관리실, 경로당 등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지등기는 택지개발사업준공 이후에 취득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대비용)는 제외한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 (이 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해야 수납하여야 함.단,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수납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 게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제출건 세대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2세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 공급 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정 건축물을 신탁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면행조건은 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이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원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격

1. 무주택 디자녀 특별공급(3%, 20세대)

(단위 : ㎡)

구 분	101.8190	116.592(A)	116.671(B)	116.499(C)	128.2866	135.5738	소 계
총 계	3	3	3	2	7	2	20
경 기 도 (50%)	1	2	1	1	4	1	1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2	1	2	1	3	1	1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9.12. 1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 자녀3명 이상을 두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임대주택 세대별 1세대에 특별공급함
- 청약통장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거나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디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함)
- 재혼으로 생이 다른 디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인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친부 또는 입해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다른 자격에 가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인을 입증해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디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5485, 2009. 12. 4.)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비율로 공급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디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우선순위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 녀 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 대 구 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함
무 주 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감춰 또는 확인절차 방해있을 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의 2 또는 제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게주택을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3자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자격 기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자격 기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	신 청 자 격
부 양 가 족 의 인 정 적 용 기 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자격 기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격 기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격 기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자격 기입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 기입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자격의 종류, 금액, 기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을 기준으로 기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자격 기입기간에 대한 기점정산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등재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경우
① 시행감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비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이외의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청 약 예 금 관 련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이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09년 12월 16일 (수)	● 인터넷접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일시 : 2009년 12 월 24일(목) ● 발표 : 당사 견본주택 및 동아일보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접수 예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적오기등성 제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바람)
		추첨제	· 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이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여, 청약신청시 지참으로 주민등록 등본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가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점 적용됨				
		공 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6년초 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제수유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을 제외하고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 청약가능) -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2009년 12월 17일 (목)		
		공 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공 통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9년 12월 18일 (금)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점제 계산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격 기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청약가능시간 :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 국민은행에서만 청약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전용면적 102㎡이 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초 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환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 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격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환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이 확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환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환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직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은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 변경 전 면적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1984.06.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채 낙찰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에 해당되는 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생일기준의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분	
이용방법및 절차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방법
○ 종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당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전매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는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2순위 :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 됩니다.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함
▣ 노약자 ·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국민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통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동일세대 구성시: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역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